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최 은 하 의원)

의안 번호	24-120
----------	--------

발의년월일: 2024. 9. .

발의자: 최은하, 고병준, 권인순, 김승수,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오욱자,
이상원, 이한동, 차해영, 한선미

1. 제정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서 위임된 공유재산 임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충전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안전을 확보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관계법령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

4. 조 례 안 : 불입

5.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2024. 9. 23. ~ 9. 30.

나. 의견제출: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서 위임된 공유재산 임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충전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가 충전시설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설비 등을 말한다.
 - 가. 불꽃감지 센서 등 충전시설 감시 전용 경보설비
 - 나. 소화기 등 화재 초기 진압을 위한 소화용품다. 그 밖에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사업자”란 충전시설의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로서 법 제2조제10호나

목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충전시설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충전시설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11조의3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익계약 방식으로 충전시설의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조제1항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제5조(안전시설)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에

게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범위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23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2018. 12. 31., 2019. 4. 2., 2021. 7. 27.>

1.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 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

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태양광자동차”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7. 삭제 <2016. 12. 2.>

8. 삭제 <2016. 12. 2.>

9.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기 위하여 수소를 생산·저장·운송·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부품을 제작·조립하는 기업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또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생산하거나 설치·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업

[전문개정 2011. 5. 24.]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7.>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1. 7. 27.>

(생략)

제11조의3(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국가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본조신설 2018. 12. 3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7호, 2024. 7. 2., 타법개정]

제18조의7(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서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
2. 완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시설
(생략)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충전 시설 및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자금 지원과 기술 지원을 규정하여 이에 따른 비용소요가 예상된다.

나. 관련 조문

제4조(충전시설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시설)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의 입법 취지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하고 충전시설 및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를 위한 자금지원과 기술지원의 범위와 종류가 다양하고, 전기차 화재에 적응성 있는 안전시설을 선정하여 지원 항목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어, 현재 시점에서 사업내용과 예산의 규모를 자세하게 정하기 어렵기때문에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도시환경국 맑은환경과 조재현
연락처	02-3153-9284